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 윤종균의원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99
----------	-------

발의연월일 : 2025. 7. 16.

발 의 자 : 신장식 · 윤종균 · 한창민
박은정 · 김준형 · 이용우
황운하 · 이학영 · 차규근
남인순 · 소병훈 · 김우영
서왕진 · 이재강 · 홍기원
김주영 · 김선민 · 정혜경
손 솔 · 정춘생 · 김재원
전종덕 의원(22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미이행 시 사업허가 및 종사 자격의 취소,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2004년 1월 도입 이후 약 18년간 발동되지 않았으나, 지난 2022년 말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요구를 위한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한다는 명목하에 시멘트

(2022.11.29.), 철강·석유화학(2022.12.8) 품목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하여 헌법과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음.

구체적으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21조), 노동 3권(제33조)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제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보호협약), 제105호(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임. 실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해당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음.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 등 명령 발동의 요건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인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가 가능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업무개시 명령제도는 「의료법」 및 「약사법」 상의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한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된 것이나, 화물운송업은 유사 입법례의 대상인 의사, 약사와 달리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되거나 위태롭게 하는 직무라고 보기 어려운 형편임.

이에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벌칙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업무개시명령 구성요건,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4조 삭제).
- 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또는 위반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종사자격의 취소,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1항제9호,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삭제).
- 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 부과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의2제1호 삭제).

법률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3조 전단 중 “제13조,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제66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u>	<u><삭 제></u>

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9의2. ~ 14. (생략)

② · ③ (생략)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9의2. ~ 1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
소) ① -----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 10. (생략) ② (생략)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 14. (생략) ②·③ (생략) 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	---. ----- -----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준용 규정) -----
---	--

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u>제13조</u>,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제6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u>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u> 2. 3. (생략)	----- ----- ----- -----<u>제13</u> <u>조</u>,----- ----- ----- ----- ----- ----- ----- ----- -----. 제66조의2(벌칙) ----- ----- ----- ----- -----. <u><삭 제></u> 2. 3. (현행과 같음)
--	---